

교원 성과급제 시행 세칙

제 정 : 2016. 3. 1.
개 정 : 2018. 5. 21.
개 정 : 2025. 8. 1.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이 세칙’이라 한다)은 “교원 보수규정” 제3 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금강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고 한다) 전임교원의 성과급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표와 연계) ① 이 세칙은 본 대학교의 설립목표인 ‘국내 최정상 교육명문대학’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발전성, 지속가능성,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여 향후 10년 내에 목표 달성 기조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교학지원처는 교육역량의 총량 즉, 전임교원의 강의 충실도, 학생 학업성취도, 학부특성화계획의 수월성 및 추진 정도, 교육성과, 강의만족도, 학생만족도 등의 단위사업별 목표를 연도(단계)별로 수립, 실현도 점검 및 피드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연구전임교원(HK교원을 포함한다)과 강의전담교원은 제외한다.

제4조(주관부서) 교원성과급제 시행을 위한 평가 및 지급업무는 교학지원처장이 주관하며 교학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5. 8. 1.>

제5조(교원성과급의 정의) 교원성과급이란 교원 보수규정 제3조 5호에 규정한 성격의 포상금을 뜻한다.

제6조(재원) 교원성과급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교비와 법인전입금 등으로 매년예산에 반영하여 기획관리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

제7조(평가영역) 교원성과급제 시행을 위해 평가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봉사영역과 연구영역의 실적은 제외한다.

1. 교육영역의 실적 전체
2. 교육개선영역의 실적 전체

제8조(평가단위그룹) ① 평가그룹은 학문별 차이점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에서 보직교수와 학부장 외부전문가 및 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TF를 운영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 ② 평가단위그룹을 정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함에 있어 전임교원의 평가유형간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본 대학교 설립이념 구현과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은 주요 보직교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단위그룹을 구성하여 봉사영역 등의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관리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정한다.

제9조(평가요소 및 비중 등)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별 비중 등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비중 및 평가	평가기준
교육영역	교육개선영역		
평가 대항목 (소항목수)	평가 대항목 (소항목수)	각평가항목별 로 배점기준을 정하 고, 그 취득점수 를 합산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3장 제12조 및 제 14조의1 참조
① 담당강의 및 수업방법 개발 (6)	④ 교육공헌 (5)		
② 수업평가 (5)	⑤ 학부특성화 (3)		
③ 학생지도 및 지원 (5)	⑥ 조직문화형성기여 (1)		

- 제10조(평가대상기간) ① 평가 대상기간은 매년 전년도 3월1일부터 당해 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회계연도 내 집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제1항의 평가대상기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등급과 성과급지급기준) 등급과 구성 비율 및 성과급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비율 (%)	성과급 지급기준	성과급 지급제외	비 고
H	20	차등인상률+ A기준	휴직자, 직위해제자,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1. 2016학년도는 시행 원년임을 감안하여 교학지원처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예상되는 평가영역별 점수 및 합산점수를 예측 안내하여 전임교원의 실적 제고를 독려할 수 있다. 2. 위 1의 등급별 예측 안내 점수와 실제 평가결과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배정 예산과 등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등급별 인원을 조정한다.
A	60	기본임금인상률 + B기준		
B	20	호봉 동결 (or 호봉 승급)		

- 제12조(평가결과 통보) ① 교학지원처장은 성과급제 평가결과를 매년 2월중에 대상 전임교원에게 개인별로 통보한다.
- ② 제1항의 평가결과, B등급 해당자로서 익년도에 성과향상과 아울러 방과후 교육 강좌(1강좌 3시간/주) 또는 학생지도(3시간/주당)를 자발적으로 담당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A등급으로 조정·통보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개선업적 공유)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등급 심사과정에 H등급 내지 A등급 해당 교원 중 그 업적이 뛰어나 동료교원들에게 전파 확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산 대상자 수와 그 업적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학지원처장은 매학년도 말을 전후로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전체교수회의 등을 이용하여 전체 교수에게 제1항의 전파확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급 지급) 성과급은 매년 2월 중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비밀 유지) 성과급 등급 결과 등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정보에 대하여는 교내외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칙) 이 세칙에 없는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

부 칙

1. 이 제정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